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18
----------	-------

발의연월일 : 2026. 1. 14.

발 의 자 : 송옥주 · 박 정 · 서미화
문정복 · 안태준 · 소병훈
전용기 · 윤후덕 · 최민희
김주영 · 권철승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총정수를 별표 3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해당 시·도의 총정수 내에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을 거쳐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총량제’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총량제는 선거마다 동일하게 정해진 정수가 아니고, 선거 직전에 인구수를 고려하여 재산정하여 정한 숫자에서 자치구·시·군의회가 나눠 갖게 되므로, 단기간에 인구가 폭증한 지역들은 시·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수의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지역의 경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1인당 대표하는 주민수가 현저히 높아 주민대표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각 자치구·시·군의회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량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에 관한 ‘총량제’를 폐지하고, 자치구·시·군의 인구(자치구·시·군 의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 마다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현재 정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구·시·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삭제, 같은 조 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인으로 한다”를 “7명으로 하되, 자치구·시·군의 인구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구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 관한 특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가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① <u>시·도별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 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 한다.</u> ② <u>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한다. <후단 신설></u>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 원정수) <u><삭 제></u> ② ----- -----7명으로 하되, 자치구·시 ·군의 인구가 25만명 이상인 경우 인구 3만5천명마다 의원 정수를 최소 1명씩 추가한다. 이 경우 인구에는 「출입국관리 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 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 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 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③ (생 략)	<u>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 는 사람을 포함한다.</u> ③ (현행과 같음)
---------	--